

1. 개정이유

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될 때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데,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의 경우 중지기간을 현장배치 개수 제한에서 제외하고 있어, 수리 재개 시 신규 현장과 같이 다시 발주자의 확인이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해당 내용을 법령에 명시하고자 하며, 국가유산수리업등의 기술능력 미달 시 충원기한을 완화하여 국가유산수리업등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배치 확인 시점 구체화(안 제17조)

나.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요건 미달 행정처분기준 완화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8. 00. ~ 2025. 9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7조제1항 전단 중 “배치할 때”를 “배치할 때(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바목1) 위반행위란 1) 중 “1개월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요건 미달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) ① 국가유산수리업자(법 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)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영 제18조제5항에 따라 배치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국가유산수리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.	제17조(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배치할 때(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후 재개될 때를 포함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